

공공기관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 선을 통한 세종 신청사지구 작품설치방안

신 은 경

목 차

I. 서론	p.5
1. 연구목적 및 의의	p.5
2. 연구범위 및 방법	p.5
II.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현황	p.6
1. 국내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현황	p.6
가. 시스템의 변천 및 시행과정	p.6
나. 설치절차와 방식	p.6
다. 적용대상 및 법적근거	p.6
2. 미국의 공공기관 건축물미술장식 현황	p.7
가. GSA의 건축물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	7.p
1) 정책 및 설치절차	p.8
2) 설치현황과 주요작품	p.9
나. 국무부의 ‘대사관미술(Art in Embassies/AIE)’ 프로그램	p.12
1) 작품의 관리와 전시기획	p.13
2) 작품교류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p.13
III.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국내외 비교 및 개편의 필요성	p.14
1. 국내외 사례비교	p.14
1) 정부미술품 시스템을 통한 관리와 운영	p.14
2) 작품의 선별 및 설치	p.14
3) 관리·보존·수복을 위한 기구 운영	p.15
2. 공공기관 작품설치를 위한 시스템의 개편과 도입방안	p.15
1) 개편의 필요성과 개선에 따른 운영효과	p.15
2) 성격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시행방안	p.16
IV. 세종시 신정부청사지구의 효과적인 작품설치방안	p.16
1. 작품설치 형태의 변경	p.16
가. 주문제작을 통한 기구의 문화적이미지 확립	p.16
나. 공모전을 통한 정부청사의 부처별 이미지 확립 및 전시	p.17
다. 전시형태의 작품 순환구조	p.18
1) 국내외 주요작가 초청전시 개최	p.18
2) 미술은행·정부소장미술품의 작품 대여전시	p.19
2. 전시 전문공간 조성	p.19
가. 정부청사지구 내 작품전시공간 개설	p.19
1) 야외 조각공원 및 전시장 조성	p.19
2) 로비와 홀을 개조한 특별전시공간 설치	p.20

나. 미디어작품 전시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설치	p.21
3. 공간별 작품 설치방안	p.22
가. 학교 및 연구시설	p.22
나. 주거지구 및 공공시설	p.23
4. 데이터베이스화와 자료 공개	p.24
가. 건축물미술작품 DB포털 강화	p.24
나. 세종시 내 작품의 현황 데이터베이스화	p.25
V. 결론	p.25
참 고 문 헌	p.27

표 목 차

<표 1>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규정사항	p7
<표 2>	GSA의 순수미술컬렉션 설치 현황	p9
<표 3>	1997-2008 건축물미술프로그램 주요사업	9p
<표 4>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공모	p18

그림 목차

[그림 1] 제니 홀저(Jenny holzer) 작품	p11
[그림 2] 솔 르윗(Sol LeWitt) 작품	p11
[그림 3] 마야 린(Maya Lin) 작품	p12
[그림 4]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작품	p12
[그림 5] 샤론 코스그루브(Sharon Cosgrove). 작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진행	p13
[그림 6] AIE 대사관미술프로그램 전시 데이터베이스 공개	p.13
[그림 7] 구분창 작품	p.13
[그림 8] 박응호 작품	p.17
[그림 9] MoMA PS1 젊은건축가 2011 수상작	p17
[그림10] 세종시 신청사 1구역 테마야외전시장 가상배치도	p.20
[그림11] 울수라 본 류징스바드(Ursula Von Rydingsvard) 작품	p1
[그림12] 이준 작가의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과사드 활용 예시	p.21
[그림13] 세종시 도시개발구역 구상도	p.22
[그림14] GAC의 작품 검색창	p.24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1972년 시작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이 만들어졌고, 많은 논의 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로 정리되어 왔다. 제도의 형태도 단순한 미술작품을 장식으로 설치하는 것에서 하나의 공공예술 작품으로 전시하는 형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제도에 관련한 조례가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작품을 심의하고 사후관리 하는 제도 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¹⁾ 또한 작품이 설치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작품이 공공미술로서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개선과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세종시로 신청사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에 대한 미술작품들의 공정하고 적절한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적인 면에만 집중된 건축물의 형태를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건축비용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개선을 통한 세종시 신청사 지구의 작품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서 나타난 형식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조례, 건축법 시행령에서 동시에 다루지는 부분으로 명확한 시행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적용된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세종시 신청부청사 지구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총 3번의 이주단계를 거친다. 15개의 정부지구와 주요 연구기관, 학교들이 모두 세종시 신청사로 모이게 되며, 세종시 전체가 도시 종합개발이 들어간 상태이다.

이미 주거를 위한 시설들은 완공을 앞둔 상태이고 정부지구와 주거지구가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개발과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활용한 공공미술설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도시로서 세종지구에 대한 작품설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연구 방식은 ‘건축물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과 ‘대사관미술(Art in Embassies/AIE)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를 활용한 작품 설치 개선방안을 찾아본 뒤 세종시 신청사 지구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1) 양현미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p.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II.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현황

1. 국내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현황

가. 시스템의 변천 및 시행과정²⁾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1972년 8월, 건축비의 1%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의도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시작은 같은 해 9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1982년 6월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조항이 신설되었고, 1984년 서울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졌다.

1988년에는 연면적 적용이 7000㎡ 이상으로 완화 조치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되어졌고, 2011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미술장식제도’에서 ‘미술작품제도’로 추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1년 5월, 관련조항 9조를 개정하여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설치절차와 방식³⁾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첫 번째는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형태이다. 직접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방식과 비용, 범위 등이 지정되어있다.

작품의 설치에 있어 첫 단계로 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에 대한 고지하고, 건축주는 작가와 작품, 공간에 따른 컨셉을 잡아 설치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작가와 건축주 사이의 계약이 완료된 후 건축주는 시·도지사에게 작품에 대한 감정과 평가를 신청한다. 이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의 예술성과 적절성·가격 등을 평가하고, 사용승인 결과가 나와야 정식적으로 설치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1~2년은 작가에게 있으며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건축주가 유지 및 관리 책임을 지닌다.

2011년 새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기금으로 출연하는 절차는 시·도에서 설치의무 고지 직후,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기금출연으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주는 시·도지사와 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기금 출연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최종 승인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확인서를 발급받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적용대상 및 법적근거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의해 “①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

2) 건축물미술작품 DB포털: http://www.publicart.or.kr/HTML/system/system_synopsis.jsp 참조

3) 건축물미술작품 DB포털: http://www.publicart.or.kr/HTML/system/system_synopsis2.jsp 참조

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⁴⁾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2011년 5월 25일자로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규정과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규정사항

조항	주요내용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건축물에 따른 면적측정방식과 작품설치 기준 제시. 문화예술기금으로의 출연 비율제시. - 해당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해당되지 않는 건물: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제13조	[미술작품설치 절차·방법] 건물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 신청해야함.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결과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함. 작품설치절차 등은 건축법 제22조와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함. 절차에 필요한 그 밖의 조항은 시·도 조례를 따름.
	[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기금출연을 위해서는 계획서는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 건축물 신청 전까지 기금을 출연해야함.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관련분야 전문가가 3분의2이상 포함되어야함. - 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그 밖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필요사항은 시·도의 조례를 따름.
제15조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별지 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함.

2. 미국의 공공기관 건축물미술작품설치 현황

가. GSA의 건축물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

미연방정부는 시민들에게 국가의 민주주의적 이상에 부합하는 쾌적한 건축 환경과 예술작품을 지원하는 의무를 지키고 국가 정체성을 설립하기 위해 건축과 예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있다. 특히 아름답게 설치된 연방청사와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각 지역사회와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⁵⁾

1972년 시작 된 건축물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은 아티스트 레지스트리(Artist Registry)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작품 선택 시 참고한다. 또한 지역미술책임자(Regional Fine Art Officer, RFAO)들이 지역별로 작품취급과 설치, 프로그램 시행과 작품을 보존·관리 하고 있으며, 전문 패널을 구성하여 작품심사와 설치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⁶⁾

1) 정책 및 설치절차

GSA는 건축물미술프로그램(Art-in-Architecture Program)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4월 연방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였다.⁷⁾ 전반적인 관리 주체는 RFAO이지만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고 자문하는 점에서는 패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총 7명으로 구성되어진다. 패널들은 건축물의 상황에 맞춰 아티스트들의 리스트를 뽑으며, RFAO에게 평가서를 제출한다. 이에 RFAO는 패널의 권고와 평가,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작품을 선택하여 구매한다.

최종 3인의 작가를 선택한 후 이사회와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작품설치와 필요조건·요구조건을 타협하고 합리적인 작품과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이후 계약담당관은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의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제공하고 작품의 설치와 승인이 완료 된 후 최종적으로 작품의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작가와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작품의 설치를 위해 작품 발표 및 워크숍을 개최해야하며, 작가는 일정기간동안 작품의 보수 및 관리에 책임을 지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연방건물 건설비용의 0.5%를 예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1%에 할당하는 조항에서 1960년대에 들어 새롭게 제도화 되면서 변경된 것이다.⁸⁾

연방정부의 건축물미술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작가와 작품의 선정과정에서 전문집단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축물미술프로그램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작품의 취급을 요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연방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미술프로그램과 도시계획·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운영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GSA에서는 설치된 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리하고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통해 작품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수집된 건축물미술작품 자료들은 이미지복제정책(Image Reproduction Policy) 하에 이미지를 비영리·교육·연구 또는 학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GSA에서는 설치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보증해주고 있으며, GSA를 통해 제공받지 않은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GSA는 작품을 물품이 아닌 청사관리의 일환으로 여겨 작품의 선정과 심사·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설치기록·검사기록·유지보수기록·보존처리보고서·사진기록·부동산처분문서·컬렉션 정 보문서는 청사관리국(Public Building Service/PBS)의 PBS Portal(pbsportal.pbs.gov)을 통해 관리

5)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p.117. 문화체육관광부, 2012

6) http://www.gsa.gov/graphics/pbs/Fine_Arts_Policies_and_Procedures_2009_w101409.pdf

7) http://www.gsa.gov/graphics/pbs/AIA_policies_and_procedures.pdf

8) http://www.gsa.gov/graphics/pbs/AIA_policies_and_procedures.pdf

하고 있다.

2) 설치현황과 주요작품

다음의 자료는 GSA의 순수미술컬렉션의 건축물 작품설치 현황이다.⁹⁾

<표 2> GSA의 순수미술컬렉션 설치 현황

※ 출처: GSA 공식 홈페이지 2008.12.

※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재인용

구 분		조각	회화	건축 장식물	직물	그래픽	건축 모형	계
Region: 1	뉴 잉글랜드 지역(New England Region)	18	17	2	0	1	1	39
Region: 2	북동부와 캐리비안 지역(Northeast and Caribbean Region)	67	61	12	0	3	4	147
Region: 3	중부-아틀란틱 지역(Mid-Atlantic Region)	34	78	6	1	15	0	134
Region: 4	남동부 선벨트 지역(Southeast Sunbelt Region)	30	86	10	0	19	12	157
Region: 5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Great Lakes Region)	30	104	10	0	0	0	144
Region: 6	중부 지역(Heartland Region)	7	14	1	0	0	4	26
Region: 7	남서부 지역(Greater Southwest Region)	36	47	10	2	4	1	100
Region: 8	록키산맥 지역(Rocky Mountain Region)	17	18	2	0	0	0	37
Region: 9	환 태평양 지역(Pacific Rim Region)	42	44	22	2	0	3	113
Region: 10	북서부/북극 지역(Northwest/Arctic Region)	19	8	10	2	0	4	43
NCR: 11	수도권 지역(National Capital Region)	128	213	7	3	3	19	373
Loaned works		390	2,090	0	25	17,754	0	18,043
계		784	2,477	94	39	15,914	48	19,356

작품은 조각·건축모형·섬유 형태뿐만 아니라 벽화와 드로잉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회화와 조각 작품의 설치가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7명의 작가가 건축물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순수미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료와 형식으로 제작된 순수미술컬렉션을 포함하여 설치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주요 건축물미술프로그램의 리스트이다.¹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기획된 주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으며 조각 작품도 많지만, 영상·벽화·설치작업도 주문·제작해 전시되었다.

9)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p.123. 문화체육관광부. 2012

10) <http://www.gsa.gov/portal/content/103568>

<표 3> 1997-2008 건축미술수품공모전 주요작품

작가	년도	주요작품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1998	The Boston
솔 르윗(Sol LeWitt)	2008	Wall Drawing Doopy(Springfield)
알랜 미셸슨(Alan Michel son)	진행중	Third bank (Sacramento)
로버트 맨골드(Robert M angold)	진행중	Untitled
김미경(Mikyung Kim)	2004	River of Light (Springfield)
앨리스 에이콕(Alice Ayc ock)	2004	Swing Over (Springfield)
진 신(Jean Shin)	2008	Dress code (Springfield)
키스 소니아(Keith Sonni er)	1997	Cenozoic Codex (Springfield)
마틴 퓨리어(Martin Pury ear)	1997	Bearing Witness (Springfield)
마야 린(Maya Lin)	2005	Flutter (Springfield)
알 헬드(Al Held)	2006	Untitled (Springfield)
알투로 헤라라(Arturo H errera)	2006	Night Before Last/Chicago (Springfield)
이니고 망글라노-오발(In igo Manglano-Ovalle)	2006	La Tormenta/The Storm (Springfield)
패 화이트(Pae White)	진행중	Bugscreen (Springfield)
발레리 조던(Valerie Jau don)	2004	Filippine Garden (Springfield)
시아오제 시에(谢晓泽, Xiaoze Xie)	2005	Iowa Reports and the Spirit of Law (Springfield)
다이애나 무어(Diana Mo ore)	1999	Urns of Justice (Springfield)
리오 빌래리얼(Leo Villa real)	진행중	Sky (Springfield)
짐 캠프벨(Jim Campbell)	2006	The colorado and Broken wall (Springfield)
팀 롤린스+K.O.S.(Tim R ollins + K.O.S. (Kids Of Survival))	2007	Everyone is welcome! For the people of fargo(After Franz kafka) (Springfield)
제니 홀저(Jenny Holzer)	1999	Installation for the U.S. Courthouse and federal building (Springfield)





[그림3] 마야 린(Maya Lin). 「플러임(Flutter)」 플로리다 주, [그림4]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하늘정원(Sky 마이애미, 윌키 D. 퍼거슨 주니어 미 연방청사(Wilkie D. Garden)」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Ferguson, Jr. U.S. Courthouse)에 설치. 2005

연방빌딩에 설치. 2004

작품들은 마야 린(Maya Lin)의 조경을 이용

한 대지예술,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 작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많은 작가들은 패널, RFAO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단순히 작품이 설치되는 작업 이상의 ‘소통과 과정’들을 만들고 있다.

나. 국무부의 ‘대사관미술(Art in Embassies/AIE)’ 프로그램

미 국무부에 의해 설립된 ‘대사관미술(Art in Embassies/AIE)’ 프로그램은 미국과 대사관이 위치한 각국의 당대작품을 선별하여 200여개가 넘는 미국 법원 및 부속기관·영사관·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상설·임시·특별전시를 기획한다.¹¹⁾

1960년 존 F. 케네디가 프로그램을 공식화 하면서 12,000개 이상의 갤러리와 미술관, 문화재단,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외교기관을 통한 문화홍보를 기획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대사관 미술프로그램은 미국을 접하거나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미국의 예술과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¹²⁾

미국작가의 작품 뿐 만 아니라 대사관이 속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받아들여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작품들을 순환하여 전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AIE에는 폭넓은 현장경험을 가진 큐레이터들이 전시기획과 작품구입, 컬렉션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공관관리 부서인 OBS(The 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와 협업하고 있다.

1) 작품의 관리와 전시기획

AIE는 전시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전문 큐레이터와 레지스트라가 협업하여 진행한다. AIE의 작품 관리 중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와 온라인 공개 서비스이다. AIE를 통해 전시된 작품들과 작가 리스트는 모두 DB로 변환되며 전 세계 대사관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11)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p.147. 문화체육관광부. 2012

12) <http://art.state.gov/about.aspx>



[그림5] 샤론 코스그루브(Sharon Cosgrove). 작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진행.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2012

작품들은 길게는 3년 정도의 작품설치와 상설전시의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 상설전시의 경우 레지던시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업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퍼포먼



[그림6] AIE 대사관미술프로그램 전시 데이터베이스 공개

스·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대사관의 외관과 내부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들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경우 구본창, 강익중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가들의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지역 공공미술 참여는 작품 설치 이상의 교육·문화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아티스트들의 교환·거주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 전시 뿐 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진행, 공공미술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미국의 문화예술 전파에 힘쓰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명한 중견작가 작품 뿐 만 아니라 신진작가와 레지던시 입주 작가, 외국작가의 작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고 있다.

2) 작품 교류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그림7] 구본창 「Vessel (JUN 06)」 C-print. 서울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설치. 2010

Ⅲ.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국내의 비교 및 개편의 필요성

1. 국내의 사례비교

1) 정부미술품 시스템을 통한 관리와 운영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건축물미술프로그램과 대사관미술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의 소장미술품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어, 작품의 순환과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작품과 작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여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기관에서도 작품들을 쉽게 전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DB 포털을 통해 작품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별·건축물 용도별·건축물 면적별·작품분류별·작품가격별 통계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국내외 자료들과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각종 학술자료들도 한 번에 링크되어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물 미술작품과 정부가 소장한 미술품과 어떠한 관계로 구분되어 있는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포함하는 소품의 소장경계가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미술품관리기구의 통합운영을 통해 작품의 설치 뿐 만이 아닌 레지던시·교육·공공미술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다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시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인 혜택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별도의 작품설치·전시방식이 요구된다.

2) 작품의 선별 및 설치

작품들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련 표준조례안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표준조례안, 각 지역별 설치 조례에 따라 시행·설치되어진다. 미국의 경우 패널제도가 활성화 되어있고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작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준비되어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선별이 용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패널과 RFAO의 작품 선별 뿐 만 아니라 작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며, 작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작가와 충분한 워크숍을 거친 후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의 구조와 담당자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선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치하는 과정이 건축물이 지어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건축 구상과 논의에 있어 같이 맞춰나가지 못하는 점도 있다.

작품의 설치 뿐 만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한 전시·퍼포먼스·영상 설치 작품들은 실질적으로 전시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정된 장르의 작품만 선정되는 상황이다.

3) 관리·보존·수복을 위한 기구 운영

건축물에 설치되는 작품들은 온도와 기후환경이 작품에게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구가 꼭 필요하다. 특히 벽화와 설치조형물의 경우 보존·수복을 위한 전문 인력과 유지 연구가 작품의 설치와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GSA의 경우 RFAO와 담당 큐레이터가 건축물미술프로그램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홍보자

료·워크샵·교육책자 등을 발간하여 작품의 공개를 돕고 있다. GSA에서 원하는 ‘주기적 유지관리 지침’을 기본으로 테크니션, 큐레이터, RFAO가 함께 작품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 이후 1-2년을 하자이행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직접 유지관리 해야 한다. 하지만 하자이행기간이 끝난 뒤에는 건축주가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해야하며 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미술가가 실비로 보수해야 한다. 또한 설치된 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시·도지사가 건축주로부터 원상복귀 하도록 조치해야한다. 13)

작품이 설치된 이후 이들을 관리하는 전문 테크니션과 큐레이터의 역할이 부재상태이며, 작품 설치된 공간에 작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2. 공공기관 작품설치를 위한 시스템의 개편과 도입방안

1) 개편의 필요성과 개선에 따른 운영효과

공공기관들은 일반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 보다는 더욱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화부 개정안에서도 민간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민들의 문화향유 증진과 도시 경관 조성에 1차 책임기관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강화하였다.14)

건물 자체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시설15)과 교육·문화시설, 도시경관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DB 포털을 운영하고 있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적인 운영과 교류, 범위·방식의 확대가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작품의 데이터베이스 수합양식을 통일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작품의 설치 및 전시를 위한 전문 큐레이터와 고정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연구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작품을 보존 수복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한다.

작품의 성향과 방식에 따라 전시되는 형태는 장·단기로 나누어 구분해야하며, 퍼포먼스나 영상 설치물, 환경디자인 작품들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성격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시행방안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업무별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국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은 각기 추구하는 작품의 성향과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 작품들은 기구와 시설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는데, 미국 GSA의 경우 패널들이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작가와 작품들을 건물의 양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작품을 선택하기가 용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13) http://www.publicart.or.kr/HTML/system/system_synopsis2.jsp#faq

14) 양현미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p.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정의함.

우리나라는 작가와 작품 리스트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 작품 구입 시 건물과 면적·비용에 해당하는 작품을 찾는 것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학교 및 연구시설에는 교육적 목적의 벽화나 공공시설물, 휴식을 위한 환경조각 등의 작품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가들과의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도입도 이러한 기구에서 할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이다.

이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건물이나 시청·동사무소 같은 건물들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다양한 영상작업을 상영하거나, 전시형태의 제도 도입을 통해 순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거 및 공간시설에는 환경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한 조경작품·휴식시설·음악 분수 등의 정적인 작품들을 설치하는 등, 작가와 관계자들이 논의하여 각 지역별 구역에 따라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IV. 세종시 신정부청사지구의 효과적인 작품설치방안

1. 작품설치 형태의 변경

세종시 전체는 도시전체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정부기구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에 새로운 건물들이 각 구역마다 들어서고 있으며, 정부청사 건물을 비롯한 연구시설지구, 주거지구에 작품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2011년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작품설치 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형태의 변경은 아래의 주문 제작형, 공모전 개최, 전시형태의 순환구조 마련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9] 박응호(Eung Ho Park) 「볼링공 커튼(Bowling Ball Curtain)」 2003

가. 주문제작을 통한 기구의 문화적이미지 확립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민간기구차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규정이 먼저 시작되었고, 연간 진행되는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공공기관의 작품은 민간건물과는 달리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교육적·문화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작가와 협의를 통해 설치될 건물의 성격과 업무, 특징을 파악한 뒤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뉴욕의 학교 로비에 설치된 박응호의 '볼링공 커튼(Bowling ball Curtain)' 작업은 아이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과 작가가 논의 한 뒤 진행된 작품이다. 아이들의 기호와 취향, 연령을 고려해 완성된 작품은 아이들에게 교육적, 심리적으로 큰 만족감을 주었다.

수요자에 요구에 맞춘 작품 주문은 학교 뿐 만 아니라 연구시설, 주거시설에서도 필요한 방식이며, 주문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과 담당 부서들은 작품에 깊이

접근하게 된다. 이는 작품에 대한 교육과 소속감을 부여하게 하며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주문제작을 위한 각종 논의의 자리를 통해 지역 및 지구의 상징과 이미지를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그 곳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공모전을 통한 정부청사의 부처별 이미지 확립 및 전시

부처별 작품 설치를 위한 공모전의 개최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작품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MoMa에 PS1에서 시행중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예시로 들 수 있다.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의 PS1에서는 매년 젊은 건축가를 선정하여 작품을 PS1에 설치하고 모형도 전시를 한다. 2011년 선정된 팀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인터보로 파트너스(Interboro Partners)와 로마의 스타트(stARTT)이다. 이들은 공허한 장소를 지역주민과 지역사업가들을 직접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수합한 이후에 작품을 제작하여 공모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작품은 실제 MoMA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림9] MoMA PS1 젊은건축가 2011 수상작.
「Rendering of Holding Pattern. Courtesy of Interboro Partners, 2011」

이에 비해 세종시는 1단계 건축물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바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들 공모에 있어 주제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장소별로 종류를 입체와 평면, 벤치로만 한정시켰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6>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공모

※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구분	작품위치	작품수(개)	종류	방식	사업비 (백만원)	비고
A	1-1구역(중심관리기능군 광장)	3개 지점 이상	입체	일반	700	
C	1-2구역(출입구)	1	입체	지명	700	
D	1-2구역(국토관리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E	1-2구역(국토관리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F	1-2구역(농림해수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G	1-2구역(중심관리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1	1-2구역(종합안내실 내부)	1	평면	일반	100	
2	1-2구역(국토관리기능군 로비)	1~2	평면	일반	100	
3	1-2구역(농림해수기능군 로비)	1~2	평면	일반	100	
4	1-2구역(중심관리기능군 로비)	1~2	평면	일반	100	
5	옥상	10개 작품	벤치	일반	195	

공모전은 커다란 도시상징 프로젝트 안에서 큰 맥락을 함께해야 하며, 특별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공모 받아야 한다. 주문제작 방식과는 다르게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모전은 일정 부서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특별전을 기획하거나 구역별로 나누어 작품을 설치하는 것에 이용 될 수 있다.

PS1에 젊은 건축가 상에 뽑힌 작품들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모형과 실제구조물이 현장에 설치되어 작품으로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의 형태는 작품의 순환을 도우며, 정부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통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부처별로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전시형태의 작품 순환구조

1) 국내외 주요작가 초청전시 개최

적은 비용으로 작품의 교환주기를 짧게 하고, 많은 작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시형 작품설치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초대전, 국립 레지던시에 소속된 작가들의 오픈스튜디오를 활용한 기획전, 대안공간과 협업을 통한 신진작가 특별전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

특히 신진작가들이나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은 동시대의 새로운 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레지던시·대안공간과의 협업하여 전시하고, 이들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해 비영리기관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미술 관련 유명 작가들을 초대하는 전시를 통해 문화 향유의질을 높이고, 가까이에서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대사관미술(Art in Embassies/AIE)’프로그램에서는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표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다른 지역 대사관들과 연계하여 순회전시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연구 기관, 정부 기관별 연관 작가들을 초청하여 특별전을 개최하는 형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미술은행·정부소장미술품의 작품 대여전시

정부소장미술품과 미술은행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미술은행의 경우 대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 원하는 작품들을 쉽게 찾아 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소장미술품의 경우에도 작품을 한곳에 계속 설치하는 것이 아닌 대여와 교류를 통해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도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주에 들어서게 될 정부미술은행 수장고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는 세종시와 거리상 약 21.7 km로 30부 안팎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기간 대여를 통해 소장품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거나, 2-3년 기준의 장기간 대여를 통해 설치작품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세종시와 청주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장고 투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문화적·교육적 질을 높여야 한다.

2. 전시 전문공간 조성

가. 정부청사지구 내 작품전시공간 개설

정부청사 구역 안에는 각기 다른 부처들이 한 건물 또는 이어진 건물들에 함께 입주하게 된다. 구역은 층 또는 건물 형태에 따라 나뉘지며, 각각 공간시설들이 함께 설계되어있다. 정부청사 건물 자체에 공간을 따로 빼내서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개설이 필요하며 전시공간이 일상공간과 사무공간의 범위를 많이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야외조각공원과 전시장 조성, 사각지대나 로비, 홀을 개조한 작품설치 공간 마련, 건축물의 외벽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요구되는 바이다.

1) 야외 조각공원 및 전시장 조성

세종시 부지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공원 녹지, 유통공장시설, 교통시설로 나뉘 볼 수 있다. 이 중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곳은 공공청사, 교육·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이다. 1단계 1구역의 설계뿐만 아니라 각 청사들은 건물 당 공원을 낀 형태로 건설되었는데, 작품 설치 장소를 개방시키고 공간시설 이용을 확대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 건축물미술 프로그램인 'Percent for arts'는 1983년 법령으로 제정된 후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미디어·페인팅·모자이크·유리·섬유·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넓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졌다. 많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작품과의 소통이 원활해 졌다.¹⁶⁾

정부청사 및 각 공간시설에 배정될 작품의 설치를 특화시켜 야외전시장 및 조각공원을 구성

16) DCLA. *IBO's Programmatic Review of the 2007 Preliminary Budget*. p.8 New York City IBO. 2006

하고 이를 묶어주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야외전시장을 구상할 경우 테마를 잡아 구역별로 특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 앞 공원은 ECO 또는 자연과학 계열의 큰 테마로 묶어 그에 맞는 작품을 전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앞 건물은 미디어 설치작업을 위한 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부처별 특징을 살리는 문화 공원과 야외 전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10] 세종시 신청사 1구역 테마야외전시장 가상배치도

야외전시공간은 공원형 전시관 뿐 만 아니라 주차장 형태, 분수와 녹지 조성과 함께 공간을 논의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만 공간을 배분하기 보다는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시 전시공간과 주기적으로 전시작품을 바꾸는 공간도 나누어 구성해야하며, 상시전시작품 일 경우 작품의 위치와 정보를 수합하여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로비와 홀을 개조한 특별전시공간 설치

로비나 홀은 자칫 공허하고 낭비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저조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높고 넓은 공간으로 작품이 설치되기에는 적절한 공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로비의 등과 천장, 구석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전시 공간 구성을 통해 작품의 상시전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획전을 할 수 있는 이동식 가벽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뉴욕 법원에 설치된 울수라 본 류징스바드(Ursula Von Rydingsvard, 1942-)의 작품 카툴 카툴(katul katul)의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홀의 천장 공간을 이용해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는 낭비될 수 있는 공중의 공간을 이용한 사례로 홀이나 로비같이 천장이 높은 공간구조에서 적용 될 수 있는 전시형태이다.

정부청사 한 건물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작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11] 울수라 본 류징스바드(Ursula Von Rydingsvard, 1942-) 카툴 카툴(katul katul). 뉴욕 법원 설치. 2003

특별전 형태의 작품도입이 필요하다. 작가와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감각적이고 편리한 휴게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쇼파·테이블·실내 분수 등의 작품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 작품을 편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작품을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설치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작품을 체험하고, 영상작업이나 공연 영상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장치의 설치도 필요하다.

나. 미디어작품 전시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설치

현대에 들어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설치작업이 많이 등장했다. 조각이나 회화 작품 뿐 만이 아닌 미디어 작품을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하게 되면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도 영상작업을 투사할 수 있으며, 큰 공간인 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파사드를 한 번 설치하면 영상작품은 바뀌 가며 전시해 다양한 작품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도시 경관사업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정부청사 건물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그림12] 이준 작가의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활용 예시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 작업들은 단순 상영보다는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한 작품 상영과 참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 콘텐츠로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시설 이나 학교에 설치될 경우 교육적 요소를 더해 게임형 참여 작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문화재를 소개하는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두워지는 시간에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건물 앞 공간시설을 누리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벤트적 요소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3. 공간별 작품 설치방안

한국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민간시설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며 시행되어 왔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공공건물과 공공건설물에만 적용하다 점점 민간건축물로 확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민간건축물 위주로 제도가 적용 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앞지르는 선도적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규제 조항이라는 논란도 있다. 외국처럼 누적되어온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민간 건축주들의 인식 부족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¹⁷⁾



[그림13] 세종시 도시개발구역 구상도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공공건물의 작품설치는 민간건축물보다 도시환경개선과 문화조성에 큰 효과를 끌어올 수 있다. 또한 민간건축물들이 지향해야 할 제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세종시는 전체가 도시개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앙행정지구, 문화·국제교류지구, 도시행정지구, 대학연구지구, 첨단지식기반지구, 의료복지지구, 주거지구로 나누워 볼 수 있으며, 옆의 지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들은 구역별로 모여서 배치되어있다.

지구별 특성을 살린 작품의 선택과 작품 설치 형태가 연구되어야 하며, 기구 안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작품을 설치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가. 학교 및 연구시설

학교와 연구시설은 작품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9개의 학교가 개설될 예정인 세종시는 학교에 설치될 작품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뉴욕에서 시행중인 'Percent for Arts' 프로그램에서는 공공건물 및 정부 건물 건설비용의 1%를 문화예술 기금으로 돌려,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작품들을 구상하여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작품은 작가의 제작물 형태도 있지만, 작가와의 프로그램 혹은 연구소와의 연계프로그램을

17) 김영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157 《역사와 사회》 2005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작품을 설치하기도 한다. 작품의 구입 대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여 진다.

대학·연구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첨단지식기반지구, 문화 국제교류 지구가 연합하여 협업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단순한 작품 설치 이상의 문화적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팀이 되어 작품을 제작하고 모형물을 만들어 보는 등 대화를 개최하는 방식과, 워크샵이나 강의를 제공해 특정 학문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동적인 움직임이 학교와 연구 시설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

나. 주거지구 및 공공시설

도시환경 중에서 공공 공간의 활성화는 기능적인 면에서 교류, 교역, 교통이 조화를 이루고, 인공적인 환경과 자연이 심미적으로 어우러지며,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¹⁸⁾ 또한 주거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안락한 형태의 구성이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핵심에는 문화예술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주거지구와 공공시설, 공간시설에 설치되는 작품들은 작품으로서 공간을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작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미국의 맨해튼에 설치되었던 리차드 세라의 작품은 공간의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참고해야 할 안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1981년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1939-)의 사건¹⁹⁾을 겪을 맨해튼 지역의 프로그램은 사건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사건은 공공미술의 활동에 있어 제작지원의 주체나 작품 생산자가 중심이 되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작품의 수용자, 즉 일반대중을 공공미술 활동의 중심에서 고려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또한 실제로 이 작품을 의뢰했던 공공시설국은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결정하거나 작가의 계획안을 변경할 때조차도 해당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했다.²¹⁾ 맨해튼 지역은 이 사건을 이후로 투표와 패널의 심사를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작품의 설치 공간에 대한 배려와 분석도 함께 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도시조경사업과 함께 논의하여 가로등, 인도, 공공설치물 등을 디자이너나 작가의 작품을 활용해 제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4. 데이터베이스화와 자료 공개

18) 김영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155 《역사와 사회》 2005

19) '기울어진 호'는 공공시설국인 맨해튼 다운타운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 앞 광장에 의뢰되어 세워진 작품으로, 시민들이 동선의 방해와 경관을 망친다는 이유로 법정시비에 까지 올라 결국 세라의 작품이 폐소한 사건을 말한다.

20) 김윤경 <공공미술, 또 하나의 접근법> p.232 《현대미술사연구》 2004

21) Daniel Grant. *Bland Art in Every Pot*. Nation. 1999. 11

가. 건축물미술작품 DB포털 강화

건축물에 설치되는 작품들은 ‘건축물미술작품 DB’ 포털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의 이미지와 정보의 수합이 지역마다 일정한 양식을 맞춰 꼼꼼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수합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포털에서는 작품분류별, 작품가격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연면적별, 건축물연도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 구분에 있어서는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국내외 사례를 전달하는 코너가 있지만, 작품 설치에 관한 자료만 있을 뿐 시행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설치사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역 및 지구별로 구분된 작품 설치현황과 작품의 상세한 설명 등이 추가되어야 하고, 작품을 검색할 때 카테고리를 상세히 만들어 포털 이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미술작품 DB포털을 세종시 시청 홈페이지, 정부 기구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새로운 작품의 현황, 정보, 전시 일정 등을 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컬렉션 검색

Search the Collection

작가	Artist	<input type="text"/>	
제목	Title	<input type="text"/>	
날짜(년도)	Dates (years)	From: <input type="text"/> To: <input type="text"/>	
재료	Medium	<input type="text"/>	
대상	Subject	<input type="text"/>	
장소	Place	<input type="text"/>	
작가	Portrait	<input type="text"/>	
설명	Description	<input type="text"/>	
GAC 번호	GAC number	<input type="text"/>	
위치	Location	<input type="text"/>	Search <input type="button" value="→"/>
그룹	Groups:	<input type="text" value="Entire Collection"/> <input type="button" value="v"/>	Clear <input type="button" value="→"/>

Please note that some of the Collection is not searchable by Subject or Place.

[Collecton search tips](#)

[그림14] GAC의 작품 검색창

※ 출처 :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영국의 GAC의 경우²²⁾ 작품을 검색하는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어 있다. 검색 뿐 만 아니라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작품의 설명, 설치 현황, 설치과정, 작가의 작업관, 연관된 다른 작품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역별, 기구별 작품 설치현황,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관람객을 끄는 방법도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소셜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작가와 작품, 전시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함께 되어야 한다.

나. 세종시 내 작품의 현황 데이터베이스화

세종시 전체 지구에 전시되는 작품들의 리스트와 정보들을 수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세종시 내 자체적인 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는 설치된 작품 뿐 만 아니라 작가와의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등의 행사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소셜 네트워크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전시일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자체적인 홍보수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작품에 대한 건의 사항, 질의사항 등을 수합할 수 있는 포털의 운영도 중요하다. 정부청사와 연구기관 단지로써 학술자료와 연구보고서 등도 공개되어야 한다.

V. 결 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환경조성과 향유권의 획득은, 이제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감각은 높아지고 요구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여러 해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축주와 기업을 위주로 시행·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의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나왔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다. 정부기관은 도시를 넘어 문화 환경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연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큰 범위로 공공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현행의 단순한 작품 설치로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넓은 시야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제시한 공공기관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을 통한 세종시 신청사 지구의 작품 설치방안의 제안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적인 구성을 요구한다.

작품을 통한 공간 채우기식의 설치방식은 실질적으로 교육적·문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특별전, 워크숍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념의 넓혀 전시형태로 작품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작품을 변경해주고 주요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가지 않아도 좋은 동시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레지던시에 소속된 작가들이나 대안공간에서 전시하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대중들에

22)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p.87. 문화체육관광부. 2012

게 공개함으로써 클래식하고 장식적인 작품들이 줄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 동시대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 또한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전시된 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유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을 알리고 자료를 남기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를 위해서는 자칫 낭비될 수 있는 공간인 야외공원, 주차장, 녹지 등을 활용하여 야외 전시장과 조각공원등을 조성하고 테마별로 구역을 나눠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건물 내부에 홀과 로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천장을 활용한 설치공간의 확보와, 건물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다양한 미디어 작업들을 선보이는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면 멋진 벽면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들을 알릴 수 있으며, 작가들의 작품을 자주 순환하여 전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체험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공공미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작품의 전시일정, 설치 현황,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온라인 공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영국과 미국의 주요 뮤지엄과 정부미술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작품의 정보제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홈페이지와 검색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별 관리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허점과 부족한 부분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자료를 모으는 틀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작품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 건축주에게 과하게 제도가 적용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자발적인 제도 정착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문화 환경 개선으로만 축소시켜 정리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가지는 궁극적 가치와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규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제문화학회. 2005
- 김윤경 『공공미술 또하나의 접근법』 한국미술사학회. 2004
- 양현미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 양현미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 최병식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Daniel Grant. *Bland Art in Every Pot*. Nation. 1999. 11
- DCLA. *IBO's Programmatic Review of the 2007 Preliminary Budget*. p.8 New York City IBO. 200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건축물미술작품 DB포털 www.publicart.or.kr
-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 세종특별자치시청 www.sejong.go.kr
- 조달청(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www.gsa.gov
-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NAP) www.cnap.fr